

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2015~
----------	-------

제출일자	2015. 06. .
제 출 자	이성복 의장 외 10명

1. 제안이유

- 거창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표기되어 있는 한자 “議” 자를 한글인 “의회” 로 변경하여 우리민족의 자랑스러운 문자인 한글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한글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며,
- 용어 순화와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의회기 및 배지 한자 도안을 한글로 변경 (안 제3조)
 - “議” → “의회”
- 일본어식 용어 순화 및 배지 이면의 번호 조각 삭제 (안 제5,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- ① 「지방자치법」 제43조

나. 예산 조치 : 해당사항 없음(기존예산 활용)

다. 집행부의견조회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 사항

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- (3) 입법예고 : 해당사항 없음
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거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호·제3호 중 “議” 를 “의회” 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옥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“후렌지” 를 부착한다” 를 “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색실을 단다” 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의회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” 를 “의회대수를 새긴다” 로 한다.

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 별지와 같이 한다.
별표 4는 삭제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「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」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[별표 1] 사용표지의 모형



- “의회” 자 및 무궁화 색상 : 금색, 원형 내 바탕색 : 백색

[별표 2] 의회기 규격 및 모형



(실내용)

가로 135cm, 세로 90cm

무궁화, 원, 글씨(금색)
원형내(백색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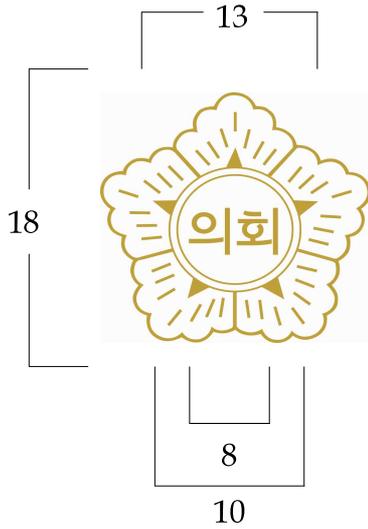
(옥외용)

가로 210cm, 세로 140cm

무궁화, 원, 글씨(금색)
원형내(백색)

[별표 3] 배지 양식

1. 모형 및 색상



뒷면 : 거창군의회 제 대

2. 규격

모형 내용		규격
무궁화형	5지	1.8cm
무궁화원자형	○	1.0cm
글자형	서울남산체	0.8cm

가. 휘장 직경 1.8cm

나. 휘장 바탕 및 '의회'자는 황금색

다. 원형내 백색

3. 재료 및 방법

가. 동으로 하되,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

나. 색상 중 '금색'은 황금색으로 도금

「거창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」 [별표 1]

전 면

제 호

지방의회의원신분증

사 진

성명

영문

 경상남도 거창군의회

후 면

지방의원신분증

성 명 :

생 년 월 일 :

기 간 :

상기자는 경상남도 거창군의회
의원임을 증명함.

2000. 0.

 경상남도 거창군의회 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)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중앙 : “議”자</p> <p>3. 색상 : 무궁화의 형상 및 “議”자는 금색,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게양)</p> <p>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. 다만, <u>옥내에 게양되는 의회 기는 “후렌지”를 부착한다.</u></p> <p>② (생략)</p> <p>제7조(배지제식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의원배지는 이면에 의회명과 <u>의회 대수 및 번호를 조각한다.</u></p>	<p>제3조(사용 표식의 모형과 색상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“<u>의회</u>”--</p> <p>3. ----- “<u>의회</u>”----- -----.</p> <p>제5조(게양)</p> <p>① ----- <u>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 에 금색실을 단다.</u>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7조(배지제식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의회대수를 새긴다.</u></p>

【관련 법령】

지방자치법

제43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